

실험·실습비 관리운영 내규

제정 1994. 4.11.

개정 1995. 4.20.

개정 2024. 4.11.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교과운영과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실험·실습비를 합리적이며,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분) 실험·실습비는 교과운영비와 교육활동비로 구분한다.

제3조(실험·실습비의 배정) ① 실험·실습비의 배정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총장은 매 학년초에 제1항의 배정기준에 따라 실험·실습비를 배정한다.

제4조(사용범위) ① 실험·실습비는 학과 중심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과운영비 : 교과과정에 따른 실험·실습 소요경비 및 실험·실습기기의 관리운영 경비

2. 교육활동비 :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경비

② 실험·실습비 항목별 사용범위는 별표1과 같다.

제5조(집행계획서 작성 및 승인) ① 학과장 및 대학원 주임교수(이하 “주임교수”라고 한다)는 배정된 실험·실습비의 집행계획서(이하 “집행계획서”라고 한다)를 작성하여 학과장은 소속 단과대학장에게,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학과장 및 주임교수가 제1항의 집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학생대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주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학생대표가 없는 때에는 학생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소속 대학(원)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집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대학(원) 총괄표와 함께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기획처장은 제출된 각 대학(원)의 예산 집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(원)장에게 통보한다.

제6조(집행절차) ① 실험·실습비는 소속 대학(원)장이 「위임전결 규정」 별표1에 따라 기획처 예산통제를 거쳐 집행한다.

② 실험·실습비는 실험·실습비 집행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집행하고 지침에 없는 사항은 「물품구입 규정」, 「예산·회계 규정」, 매 학년도 예산집행지침, 기타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을 준용하여 집행한다.

제7조(실험·실습 일지 작성·비치 및 집행내역서 제출) ① 학과장 및 주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실험·실습 일지를 비치하여 실험·실습의 지도교수, 대상학과와 학년, 학생수, 일시, 장소, 소요된 재료 및 용품 기타 관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2. 실험·실습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실험·실습비 집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② 학과장 및 주임교수는 매 학기 종료 후 실험·실습비 집행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은 소속 단과대학장에게,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소속 대학(원)장은 제2항의 집행결과 보고서를 검토한 후 대학(원) 총괄표와 함께 기획처장에게

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험·실습비 집행 평가 등) ① 기획처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실험·실습비 집행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, 그 평가결과를 예산지원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(별표1)

실험·실습비 항목별 사용범위

구분	교과운영비	교육활동비
사용 범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실험·실습재료 구입비 2. 실험·실습용 기기류 부품구입비 3. 시약, 초자구입비 4. 교과과정상 필요한 학술조사 및 발굴 경비 5. 실험·실습용 각종 기기에 부소되는 소모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6. 실험·실습 보조자료의 인쇄, 복사비 7. 교과과정상 실험·실습 성과물의 제작 및 발표, 전시비 8. 실험·실습 관련 인건비 9. 실험·실습 및 교과자료 구입비 10. 실험·실습용 연료 구입비 11. 실습실 등 수업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유지·보수비 12. 기타 교과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과활동과 관련되는 견학, 현장실습, 사적답사 및 학술활동 보조비 2. 전시회, 발표회, 공연 등의 각종 행사 보조비 3. 세미나 및 특강비 4. 학과에서 주관하거나 대학본부 또는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경비 5. 혁신적 수업모델(캡스톤 디자인, 플립러닝, PBL 등) 관련 운영경비 6. 기타 교육활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